

# 2003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

## 자료제공 / 식품의약품안전청

### I. 식품안전관리의 여건 및 전망

#### □ 식품안전 관련 주변환경의 변화

- 토양·대기·수질오염 심화 및 내분비 장애물질 등 새로운 위해 물질 증대 - 식품의 위해요인 증가
- 유전자재조합식품(GMO) 등 신소재식품 생산증가 - 관리체계 개선
- 국제적 교역량 증가에 따른 수입식품 급증 - 검사의 효율성 제고

#### □ 소비자욕구 및 소비행태 변화

- 외식기회 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식품의 양보다는 질·기능·안전위주로 변화
-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이 확대되고 간편식, 집단급식 선호로 식중독 위험 집단화·대량화
- 고령화 사회도래로 노인 부양 및 건강관리와 관련식품에 대한 안전욕구 증대

#### □ 식품안전관리 업무영역 확대

- 「건강식품에관한법률」발효, GMO식품 안전성 평가 등 식품안전관리대상 확대
-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GMO표시제 시행등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증가
- WTO출범에 따른 기준·규격 국제화 및 국제 통상·협력 증가
- 국·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신속 입수 및 평가·분석·대책수립 등

## II. 200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책방향

### 1. 시책방향

#### □ 소비자중심의 식품안전관리 체계확립

- 식품안전정보의 신속수집 및 대응체계 구축
  - 필요시 전담반 설치·운영
- HACCP 조기정착 및 확대발전 방안 강구
  -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
- 건강기능식품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
  - 차질없는 법 시행준비
- 소비자 및 영업자에 대한 식품안전의식 고취
  - 식품안전의 날 행사
- 표시기준의 합리적 개선
  - 소비자 구매정보제공 기회 확대

#### □ 부정·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

- 상시감시체계 구축등 유통식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강화
  - 중앙기동단속반 운영 및 합동단속 활성화
- 부정·불량식품 신고활성화 및 민·관 협력감시체계 구축
  -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리적 운영
- 제조·가공업소 위생등급제도 시행으로 감시활동의 효율성 및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제고
- 유통식품 수거·검사강화 및 식중독예방 관리체계 강화
- 허위·과대광고 행위 근절
  - 감시전담반 설치

#### □ 수입식품 및 GMO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

- 계획수입신고제도 도입등 수입검사체도의 관리개선
  - 검사의 효율성 제고
- 유전자재조합식품(GMO) 관리체계 구축
  -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
-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
  - 소비자 인식도 제고

## 2. 2003년 주요 추진계획

### □ 건강기능식품 국가관리체계 구축

- 소비자 피해예방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육성·발전을 위하여 건강기능 함유식품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
  - 「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」시행(2003. 8월)
- 동 법 하위규정 제정 추진
  - 동법 시행일 이전까지 입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
  - 주요내용
    -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,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, 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 및 수입신고지침 마련
    -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, 기능성원료 및 성분 평가기준 마련 등
- 건강기능식품 관련업종신설에 따른 관리인력 조직 보강 추진
  - 본청 및 지방청에 인·허가, 신고업무등 수행전담 인력 및 조직 등

### □ 식품위생검사기관 효율적 운영방안

-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관련규정의 정비
  - 검사기관의 구분(식품위생검사기관, 자가품질검사기관),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의 강화의 효율적 방안 강구
-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도·감독강화
  - 투명성·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eam에 의한 지도·점검
-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조직·기능개선 유도
  -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험결과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적 기관으로 전환토록 유도

### □ 중앙기동단속반 효율적 운영 방안

-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식품에 대한 기획 단속 실시
  - 유해가능성이 높거나 개선 필요성이 높은 식품
  - 신물질 및 의약품원료 등의 첨가가능성이 있는 기능성 강조식품
  - 계절적, 지역별 위생취약식품 및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불만도 높은 식품류 등

- 단속의 과학화, 체계화
  - 위해도에 의한 단속항목 집중관리, 단속예고 등 단속기법 개발 전파
  - 단속내용이나 단속업소의 D/B화로 위해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
- 지도단속, 제도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확대 실시
  - 최신설비 및 국제기준 준수업소의 전문가 초빙교육
  - 업종별 선진업소의 실무책임자를 통한 위해 방지 기법 교육
- 위반사례에 대한 대 국민 홍보강화
  - 위반 업소명, 제품명 등을 TV, 신문, 식품전문지 등을 통하여 홍보
  - 위반업소와 소비자에게 동시에 경각심 고취

□ 식품안전 정보의 신속 수집 및 대응체계 구축

- 위해 정보 신속 대응체계 확립·운영
  - 정보의 신속한 입수 및 처리를 위한 전담처리반 구성·운영
  - 각종 정보 내용분석 및 평가, 등급분류와 신속 대응체계 확립
  - 중·장기적 관리가 요구되는 정보는 Task Force팀 구성·집중관리
  - 신속대응조치를 위하여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
- 잠재적 위해가능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선행조사 실시
  - 국내·외 문제제기 된 위해 가능물질에 대한 실태조사
- WHO등 국제기구에 연락관 파견 추진
  - WHO / Food Safety Department

□ HACCP 제도의 확대발전 전략

- HACCP 적용품목의 지속적 확대 및 기준적용의 내실화
  - 김치·절임식품 등 4개 식품군에 대한 [HACCP관리기준] 추가 고시
  - 빵류등 5개 식품군에 대한 일반 적용모델 개발
  - 내실있는 시범사업 실시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
- HACCP 활성화 방안 강구
  - 적용업소 우대방안 강구, 교육·훈련기관의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
  - 기술지원, 관리조직 확충 및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  - 소비자 및 영업자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

□ 소비자 구매 정보제공 기회의 확대를 위한 표시기준 합리적 개선

-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을 위한 Allergy등 부작용 표시 추진
  - Codex, 미국, 일본 등 제 외국과 국내의 Allergy 유발 개연성 성분 및 관련제품의 표시방안 마련
- 건강기능식품 영양표시 확대적용 검토
- 일부 불합리한 표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

□ 식품제조·가공업소 위생등급제 실시

- 전국 17,000여개 식품제조·가공업소에 등급을 부여하여 전산관리
  - 상위등급은 자율위생관리홍보 유도, 하위등급에는 식품위생 지도·점검 집중 실시 등

□ 유통식품 수거·검사 강화

- 부적합비율 또는 유통점유율이 높은 20개 품목선정, 매월 위해 항목 위주의 수거·검사 실시
- 신규 생산품목 및 문제 식품 신속 수거검사체계 구축 등

□ 민·관 합동감시체계 구축

-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제도의 개선방안 검토
  -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'전문명예감시원'과 '단순 명예감시원'으로 구분하여 운영
  - 전문 명예감시원과 단순명예감시원의 활동내용을 차별화
- 1399 신고제도 홍보 활성화
  - 라디오, 인터넷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한 홍보효과의 제고

□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성 확인제도 도입

- 위생취약국가에 대한 현지 안전성 정보조사 실시
  - 부적합비율이 높은 위해 우려 국가의 위해 물질 사용실태 및 식품 제조·가공과정 등의 위생상태 등을 현지출장 파악 대처
- 해외 주재관 파견 확대 추진
  - 수입식품의 부적합율이 높은 국가(동남아 등)에 대한 파견 확대
    - 생산 단계 및 수입전 단계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각종 정보수집 및 국내기업의 수출지원 업무수행

-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인 「공장등록제」 운영
  - 외국의 제조·가공 공장 및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 후 등록·관리
  - 등록된 업체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수입검사 일부 또는 전부 면제

□ 수입식품검사 제도의 효율화 추진

- 최초정밀검사의 효율성 제고
  - 일률적인 성분 규격 검사를 지양하고 위해항목 위주로 검사
- 무작위표본검사 제도 개선
  - 위해 가능성에 따라 검사비용 탄력 적용, 부적합 이력이 없는 제품 및 업소에 대한 검사 면제
- 동일사 동일식품 인정제도 보완
  - 동일사 동일제품을 계속 수입시 3년에 1회씩 국내·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서 제출의무화 등
- 수입 계획제도 도입 검토
  -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한 식품등을 계속 수입하는 경우
    - 매 수입 시 마다 신고 및 검사를 생략하고 일정기간(1년~3년) 동안의 수입량을 일괄신고를 하고 수입 시마다 보고하게 함으로써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화 도모
- 인터넷 수입신고 시스템 운영·유지
  - 수입신고서 인터넷접수 및 검사진행 정보 등 대민 서비스 제공

□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

- GMO식품의 안전성 확보
  -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50여종의 GMO 농작물 수입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추진
  - 국내에서 식품으로 개발되는 GMO 농작물에 대하여도 안전성평가 의무화
    - ※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04. 2월부터 시행
- 가공식품의 비의도적 혼입치 설정 검토
  - 각 국별 실태 분석과 검사법등 여건을 감안하여 혼입치 결정
    - ※ 국가별 비의도적 혼입치 : 유럽1%, 일본5%, 우리나라3%(자연농산물)
-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교육·홍보
  - 주기적인 소비자 인식도 조사 및 그 결과를 활용한 대상별 세미나 등 홍보 추진

- GMO 관련 국제 협력 강화
  - GMO관련 국제 기준 확립을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국과 상호 의견 조율

### III. 안전한 식품의 제조·유통기반 조성

#### 1. HACCP제도 조기 정착 및 활성화

##### 가. 시책·사업개요

-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·가공·조리·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하고 이를 중점관리 하도록 하는 식품안전성 확보의 과학적 기법인 HACCP(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)제도를 식품산업분야에 조기 정착시키고자 함

##### 나.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전관리제도 도입·적용 필요성
  - 기준규격에 따라 최종 제품의 검사를 통해 안전식품의 관리를 중점으로 수행하던 종래 사후 관리적 관리방법의 비효율성 상존
  - 식품제조업 등의 신고제 전환, 식품위생관리인제도 폐지, 사전 제품검사제도 폐지 등으로 사전 예방적 관리수단 미흡
  -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 전담부서 통·폐합, 인력감원 등 사후관리 환경 악화
- 국내식품산업의 영세성과 시설·설비의 낙후로 인한 식품안전 취약
  -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소가 약 80%, 연매출액 5억 미만업체가 약 84%로 안전식품 생산기반 취약
  - 생산업체의 자율적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HACCP 적용확대 필요
- 식품환경 변화 대처 및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
  -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빈발,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, 다이옥신, 잔류농약·항생물질·방사선·중금속 등 위해요인 증가
  - WTO에 의한 식품의 국제교역과 '93년 WHO의 HACCP 도입·적용 권고 및 선진 각국의 HACCP 비 적용 식품 수입제한(EU '95. 12, 미국 '97.12 수산식품·식육제품에 적용 의무화)
  - 제조물책임(PL)법 시행(2002. 7. 1)에 따른 업계 자율 대응책 강구

### 다. 기대효과

- 새로운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 제도를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도입, 식품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
-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대규모 집단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

#### ※ HACCP 적용에 따른 주체별 기대효과 비교

| 구분         | HACCP를 적용치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HACCP를 적용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식품안전성 확보측면 | 비과학적·경험의존적 관리로 식품사고의 발생을 예측하고 예방 미흡       | 기존 기준규격 관리에 의한 맹점을 보완하고, 식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과학적으로 확보가능               |
| 소비자 측면     |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안감 상존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식품 확보 및 선택 기회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영업자 측면     | 자신이 제조한 품목에 대한 안전성 확신이 없고, 식품사고발생시 일방적 부담 | 자신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 및 확신할 수 있고 식품사고 발생시 증빙자료 제시가능      |
| 종사자 측면     | 수동적 작업분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능동적 작업분위기 쇄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식품산업 측면    | 수출에 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제경쟁력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투자비용 측면    | 투자비용 없으나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적 사용이 어렵다     | 시설개선, 전문인력·교육, 유지관리 등 초기투자비용이 크나 장기적으로 생산원가의 절감, 매출증대 등으로 이익창출 |
| 시설 측면      |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본 시설기준에 적합                     |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본시설 외에 오염 구역과 비 오염구역의 구분 등 50가지 추가기준에 적합 필요         |

### 라. 추진현황

- 1) 범 정부적 HACCP 활성화 추진
  - HACCP 확대적용을 「국정 100대 과제」로 선정·추진('98.06.13)
  - 국무조정실에「국가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」에서 관계부처 『HACCP 실무 대책반』 구성·운영('99.10.05)
  - 「국가혁신추진위원회」(대통령 자문기구)의 민생개혁 핵심과제로 선정·운영(2001.05.10)



※ 각국의 HACCP 적용제도 비교

| 국가별  |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의무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미 국  | 수산식품, 도축장, 식육처리장, 도계처리장, 식육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제적용     | 이외 식품 업계가 자발적으로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 본  | 유·유제품, 식육제품, 레토르트식품, 어육연제품, 통·병조림, 청량음료, 도축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생노동성이승인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EU   | 수산식품, 식육·식육제품, 유 및 유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제적용     | 모든식품에 적용을 추진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캐나다  | 식육, 생란·가공란(액란), 유 및 유제품, 가공야채, 가공과일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부가 승인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우리나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적용고시 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육제품, 냉동수산식품, 냉동식품, 빙과류, 집단급식소 조리식품,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, 도시락류, 비가열음료, 레토르트식품</li> </ul> </li> <li>○ 적용기준 미 설정 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업자가 스스로 기준마련 후 식약청 평가로 해당업소에 지정</li> </ul> </li> <li>○ 2003년 식약청 적용고시 예상 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김치·절임식품, 두부류 또는 목류, 특수영양식품중 영유아식품, 저산성 통·병조림, 빵류, 건포류, 조미식품(드레싱류)</li> </ul> </li> </ul> | 임의적용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도축장, 식육제품, 유가공품은 농림부에서 지정 (도축장은강제적용)</li> <li>○수출수산식품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</li> </ul> |

2) HACCP 제도마련 및 지정 현황

- 식품위생법 제32조의2(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규정신설로 법적근거 마련 ('95.12.29)
- 식품위생법 개정(2002.08.26)
  - 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
  - HACCP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정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
  - HACCP 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HACCP 적용업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
  - HACCP 지정업소는 출입, 검사를 면제하고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의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
○ HACCP 적용품목 지정 현황 : 11개 식품류의 HACCP 적용기준 고시 및 92개 업소 지정운영(2002. 11. 현재)

| 연도별  | 적용기준 고시 식품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HACCP 지정 업소수 | 지정취소 업소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계    | 11개 식품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2           | 3       |
| '97  | • 식육가공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| -       |
| '98  | • 냉동수산식품<br>• 유가공품                      | 28<br>6      | -<br>-  |
| '99  | •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<br>• 냉동식품<br>• 병과류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
| 2000 | • 집단급식소 조리식품<br>•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<br>• 도시락류 | 16           | 1       |
| 2001 | 비고시 식품은 영업자 스스로 HACCP 기준을 만들어 식약청에 지정신청 | 10           | 2       |
| 2002 | • 비가열음료<br>• 레토르트식품                     | 29           | -       |

3) HACCP 적용업소 우대조치

○ 조세감면실시(2001.03)

-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HACCP 적용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3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

○ 식품진흥기금의 장기저리융자(2002)

- HACCP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의 우선지원

○ HACCP 적용제품의 군납시 가산점 부여
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적격심사배점한도를 1점으로 가산혜택

○ HACCP 적용제품 표시 및 광고 허용

- 적용식품 표시부착 및 적용업소 지정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
-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미 적용제품 HACCP 표시 금지규정 마련

○ HACCP 지정업소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완화

- HACCP 적용업소 지정 후 3년간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완화, HACCP 사후관리로 대체

## 마. 중점 추진사항

### 〈식품의약품안전청〉

#### 1) HACCP 적용 확대

- HACCP 적용업소 확대지정 지속 추진
  - 영업자 자율로 HACCP 적용기준을 설정하여 HACCP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속 추진
  - 위해요소가 많은 식품 및 시장점유율이 높은 식품에 대한 의무적용 방안 마련
- 빵류, 건포류, 조미식품(드레싱류)에 대한 HACCP 적용 시범사업실시 및 적용업소 지정 추진
  - 해당업소 규모별로 다양하고 많은 업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추진
- 면류 등 5개 식품류에 대한 HACCP 적용 일반모델 개발
  - 관련업계가 HACCP 일반모델 개발 연구기관과 공동 참여하는 용역연구사업을 유도, 일반모델의 현장 적용성 제고

#### 2) 교육·훈련

- HACCP 지도관 등 담당공무원의 교육·훈련강화
  - HACCP 지도관 교육·훈련 교재 및 프로그램개발('03. 1)
- 신규 HACCP지도관 확충 및 전문화(22명→50명)
  - 지방청당 5명이상 확보
  - 신규 HACCP 지도관 확충 및 교육·훈련 실시(2003. 1월중)
  - HACCP 지도관의 해외(미국, 캐나다 등) 교육·훈련실시 (2003. 4월 및 11월중)
- 식품관련 단체, 영업자(유통업자 포함) 교육·훈련 강화
  - HACCP 시범사업 관련 제조·가공 및 유통영업자와 일반식품 관계단체들에 대한 HACCP 교육·훈련 집중 실시

#### 3) 소비자 홍보

- HACCP 지정업소와 정부의 공동홍보 전개
  - 관계부처(교육인적자원부, 농림부, 해양수산부 등)와 HACCP 지정업소가 공동으로 대 소비자 HACCP 홍보 전개
- 소비자단체를 HACCP 전담 홍보기관으로 지정 운영
  - 소비자가 HACCP 적용제품을 인지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 소비자단체를 HACCP 전담 홍보기관으로 지정하여 홍보 전개
- 식품유통판매업소 HACCP 적용제품 전용 판매코너 설치운영

- 백화점, 대형 할인마트 등 식품유통업소의 식품판매점에 HACCP 적용제품 전용 판매코너 설치운영을 통한 HACCP 간접 홍보 전개

**〈지방식약청, 지방자치단체[시·도(시·군·구)]〉**

1) HACCP 업무의 효율적 추진

- 앞으로 HACCP적용업소에 대한 기술지도등 기본업무와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청에서 수행
  - 각 지방청에서는 지도관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
  - 지방청의 HACCP 업무는 식품감시과에서 수행
- HACCP 업무 담당자 지정·운영
  - 관내 HACCP 적용업소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위생 지도·점검
  - HACCP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(HACCP 지도관)

2)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적극 전개

- 시·도, 시·군·구 자체 HACCP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
  - 지역실정에 맞게 향후 관내 전 식품위생업소가 HACCP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, 지속 전개
- 교육 및 홍보
  - 식품위생관계단체 및 관계영업자 위생교육시 HACCP 교육을 반드시 실시 (HACCP 지정업소 견학 적극시행 등) 실시
  - 지역정보지,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관내 소비자들에겐 HACCP 적용제품의 선택구매 홍보, 관계 영업자에겐 HACCP 적용업소의 지정 및 지정제품 구입 사용 등 홍보 실시
    - HACCP 적용의 필요성 및 장·단점
    - 우대조치 안내(HACCP 적용사실의 광고, 적용제품에 HACCP 심벌 표시허용, 세제감면, 군납시 우대, 시설자금융자 등)
    - HACCP 적용방법
    - 관내 HACCP 적용업소 현황 등
    - 기타 지역주민 및 관계영업자의 HACCP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항
- 기 타
  - 관내 식품관련대학 등에 HACCP 교과목 신설 유도
  - 식품위생업소 지도·점검 시 HACCP 개념을 도입하여 지도·점검
    -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HACCP 교육 선행

3) 식품진흥기금의 지원(지방자치단체에 한함)

- HACCP 적용 지정업소 또는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준비하는 업소의 시설 개선 투자 자금 등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적극 지원 추진
  -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기 저리융자(3%이하의 이율) 및 융자조건의 완화 등 지원책 강구
  - 관내 식품제조·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식품진흥기금지원에 관한 내용을 적극 홍보

**2. 건강기능식품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**

**가. 추진배경**

- [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]이 제정·공포(2002. 8. 26)됨에 따라 이의 차질없는 시행(2002. 8. 27)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.
-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조기정착을 위해 동법령의 홍보 및 원활한 업무이관등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

**나. 주요내용**

- 건강기능식품의 범위(법 제3조)
  -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, 캡셀, 분말, 과립, 액상, 환등의 형태로 제조한 식품(예시 : 영양보충용식품, 건강보조식품, 일부 인삼제품류등)
- 영업의 종류 및 영업허가·신고(법 제4조 내지 제8조)
  - 건강기능식품제조업 :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영업허가(품목제조신고)
  - 건강기능식품수입업 :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영업신고(수입신고)
  - 건강기능식품판매업 : 시·도지사 영업신고
- 품질관리인 선임 및 교육(법 제12조, 제13조)
  - 식품관련 전문인력으로 선임하여 제품 및 시설등을 관리토록 함.
  - 영업자·종업원의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
- 기준 및 규격(법 제14조, 제15조)
  - 건강기능식품의 제조·사용·보존등에 관한 기준·규격 및 원료·성분의 설정 고시(식약청장)
  - 기준·규격 및 원료·성분이 고시되지 않은 것은 영업자가 정하여 식약청장 인정

- 기능성 표시·광고 사전심의(법 제16조)
  - 식약청장이 정한 심의기준 및 방법·절차에 따라 위탁받은 관련단체에서 사전 심의
- 허위과대 표시·광고금지(법 제18조)
  -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·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·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(한약의 처방명등)등 허위·과대광고 금지
- 판매등의 금지(법 제23조 내지 제26조)
  - 위해건강기능식품, 기준·규격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금지
  -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경우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·생리학 적 기능·작용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우려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·광고되는 제품 판매금지
- 벌칙(법제 43조내지 제46조)
  - 무허가 제조, 위해건강기능식품 판매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(병과가능)
  - 무신고 수입·판매나 무신고 품목제조, 허위과대표시·광고, 기준규격위반,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여 판매 등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등(병과가능)

## 다. 추진방안

- [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] 시행(2002. 8. 27)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등 제정 추진
    - 시행령·시행규칙 및 표시기준·기준규격·원료 및 성분·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·기능성 표시·광고심의기준·수입검사등 관련 고시·지침등
  -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수입업 관련업무 이관
    -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, 제6항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, 식품등 수입판매업 소중 이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준·규격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청에 시행일 이전에 관련업무 이관
  - 건강기능식품 제조·수입·판매 영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
    - [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]등 관련법령과 영업허가·신고 처리절차 및 판매등 금지사항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·홍보 추진
- \*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시행(예정)

## IV. 식품등의 감시 업무

### 1. 식품제조·가공업등의 위생관리

#### 가. 식품제조·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실시

##### □ 목적

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·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

##### □ 실시방법

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식품제조·가공업소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」별표 1의 위생관리등급평가표에 따라 관할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을 평가

〈위생관리등급평가표〉

| 구 분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목 및 점수    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기본조사항목   | 업소 현황, 규모, 종업원 수, 위생관리책임자, 생산품목 등을 조사                    | 45항목        |     |
| 기본관리평가항목 |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8개 항목 120점 |     |
| 우수관리평가항목 | 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 등에 따라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| 26개 항목 80점  |     |

- 위생관리등급의 평가는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한 지 6월이상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(신규평가)하고,
  - 「식품제조·가공업소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」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
  - 장기휴업·조업중단·연락두절 등으로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할 수 없는 업소는 “위생관리등급평가불능업소”로 분류하여 관리

- 신규평가를 실시한 업소를 대상으로 최초 평가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정기평가 실시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생관리등급(자율관리업소, 일반관리업소 및 중점관리업소)별로 식품제조·가공업소에 대한 출입·검사 등을 차등 실시
- ※ 「식품제조·가공업소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」별도 시달

□ 행정사항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내의 식품제조·가공업소수, 위생관리등급 운영결과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을 수립하고, 동 평가계획서를 매년도 개시 후 1월이내에 평가대상업소 영업자에게 통지 또는 게시(인터넷 게시를 포함)
  - 또한, 늦어도 위생관리등급 평가실시 1월전에 평가일자, 평가자 및 별표 1의 위생관리등급 평가표를 평가대상업소에 서면으로 통보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평가업소명, 영업자성명, 평가일시, 평가자 성명과 위생관리등급이 기재된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0일이내에 평가대상업소에 서면으로 통보
  - 이 경우 당해 업소의 영업자 및 관계 인이 평가결과를 외부에 알리거나 이를 이용한 표시·광고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  - 또한, 매 분기별로 평가대상업소 수, 평가업소 수, 평가업소 명, 평가업소의 평가점수 및 위생관리등급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고, 시·도지사는 이를 취합한 관할 시·군·구별 평가대상업소 수, 평가업소 수 및 위생관리등급 분류결과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
- 위생관리등급 평가 결과는 출입·검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

나. 식품제조·가공업소 등 지도·점검

□ 기본방향

- 각 지방식약청, 시·도, 시·군·구청은 기관별 책임관리업종에 대한 철저한 지도·단속 실시
  - 지방식약청은 민원·정보 등에 의한 위해 우려 식품 및 문제업소 등에 대한 기획단속 병행 실시
-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과학적, 전



문적인 지도·점검 실시

- 행정처분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점검 및 고의적·반복적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및 문제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 반복 단속 실시

□ 기관별 책임관리업종에 대한 지도·단속

- 식품제조·가공업소등에 대한 지도·단속은 기관별 책임관리 업종에 대하여 각 기관 책임하에 실시

〈기관별책임관리업종〉

| 지방시약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·도(본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·군·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식품제조·가공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강보조식품</li> <li>○ 특수영양식품</li> <li>○ 인삼제품류</li> </ul> 2. 식품첨가물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3. 식품보존업                     - 식품조사처리업                     4. 식품소분·판매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등수입판매업</li> </ul> 5. 위해우려 식품 및 문제업소 등에 대한 기획단속 | 1. 식품제조·가공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어육제품</li> <li>○ 청량음료</li> <li>○ 다 류</li> <li>○ 빙과류</li> <li>○ 두부류</li> </ul> 2. 식품소분·판매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타식품판매업 (300㎡이상)</li> </ul> | 1. 식품제조·가공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 류</li> <li>○ 김치·절임류</li> <li>○ 면 류</li> <li>○ 과자류</li> <li>○ 건포류</li> <li>○ 기타식품류</li> <li>○ 일반가공식품</li> <li>○ 식용유지</li> <li>○ 조미식품</li> </ul> 2.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                  3. 식품운반업                     4. 식품소분·판매업                     가. 식품소분업                     나. 식품판매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용얼음판매업</li> <li>○ 식품자동판매기영업</li> <li>○ 유통전문판매업</li> </ul> 5. 식품보존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냉동·냉장업</li> </ul> 6. 용기·포장류 제조업 |

- 지방시약청,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소관 책임관리업종에 대한 연간 세부위생 감시계획을 수립 시행

- 또한, 식품제조·가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·단속을 실시하기 앞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이에 따라 지도·단속 실시
- 허가(신고)기관은 허가·신고·보고사항 등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책임 지도·단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효과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
  - ※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령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03. 2. 27과 8. 27 각각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과 건강보조식품, 특수영양식품 및 일부 인삼제품류제조업에 대한 허가(신고)권이 지방식약청으로 이관되므로 시·군·구는 동 업종에 관한 업소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지방식약청에 통보
- 위해식품의 광역성,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식품 및 업소에 대하여는 기동단속반에 의한 기획단속 실시
  - 지방식약청에서 문제업소 단속 중 관할지역 외의 업소를 지도·단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 또는 지방식약청과 협의하여 합동단속 실시
-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102개 식육가공품을 제외한 기타식육가공품은 식품 위생법상의 관리대상이므로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생관리 실시
- 책임관리업종 이외의 업소를 지도·단속할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

□ 지도·단속방법

-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경우 「식품제조·가공업소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」에 의한 지도·단속 실시
  - ※ 고의적으로 부정·불량식품을 제조·유통시킨 사례가 있는 업소 우선 점검
  - 지방식약청은 영업허가(신고)권 이관에 대비하여 식품위생법령 및 「기준및규격」등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여부를 총체적으로 점검
  -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다음의 사항을 집중 단속
    - ▲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·출고·사용 등에 대한 관계 서류 미작성·미제시
    - ▲ 유통기한 허위표시·변조행위
    - ▲ 사용금지 동·식물 사용 등 원료구비요건 위반
    - ▲ 위해물질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
    - ▲ 무허가(무신고) 제품 사용·보관 행위
    - ▲ 허위표시·과대광고 위반 행위
    - ▲ 유기농 표시 제품의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유기농·임·축산물 인증 원료 사용 및 「식품등의표시기준」중 원재료, 제조·가공기준 등 관련 규정 준

수여부

※ 관리기관별로 상기 사항 위반업소 명단을 작성하여 연중 특별감시 실시

- 생산품목수가 많은 업소에 대하여는 점검대상품목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거·검사 실시
  -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이 높은 품목
  -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품목 등
- 시·군·구청은 관내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 판매되고 있는 과자류, 건포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동 제조업소 명단을 상호 통보한 후 관내 업소에 대한 지도·단속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지속적으로 실시
- 점검시 즉석 시정 가능하거나 단순시설개수 및 시정명령 처분대상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업주 및 식품위생관리 책임자에게 현지도하고 이후 결과를 확인

□ 점검반 편성

- 지방식약청 및 시·도, 시·군·구는 자체실정 및 인력을 감안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- 감시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타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
  - 본청과 각 지방청 연계, 시·도는 관할 시·군·구 등과 협조
  - 필요시 지방청과 시·도(시·군·구) 합동점검 또는 상호 협조·공조체계 유지
- 점검반은 2인 1조로 편성하되, 감시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적극 활용

□ 점검횟수

-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,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
  - “HACCP 적용 지정업소”에 대하여는 지정된 날부터 2년간 면제가능(단, 법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업소는 제외)
  - 위생관리등급이 “자율관리업소”인 업소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면제 가능
  - 기타 식품위생법령에 별도의 출입·검사의 주기·면제 등이 규정된 경우 그 규정을 준용

□ 부적합 업소(제품) 신속처리 및 처분강화

- 업소 또는 제품을 점검·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허

가(신고)권자에게 신속히 통보

-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의뢰기관 등에 통보
- 허가(신고)관청은 지체없이 행정제재 처분하고 타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 병행
- 제품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이 당해 제품폐기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통보 받은 허가(신고)기관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해 업체가 신속히 해당 제품을 회수 및 판매중단 등을 하도록 유선으로 우선 조치
- 영업정지 및 품목(류)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업소에 대하여는 그 정지기간 중 불시에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
- 행정처분 기간의 종료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(3월이내)에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 재점검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동일 위반사항이 재발생 되지 아니 하도록 조치
- ※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이행결과를 보고한 경우는 제외 가능
- 무허가(무신고) 제품 제조 및 사용, 표백제 처리 등 유해제품 제조, 무신고 소분, 유통기한 변조, 질병의 치료에 효능·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한 업소에 대하여는 반드시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

## 2.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식·음료 안전관리 대책

### □ 식·음료 안전대책 수립·추진

- 행사장, 경기장 등의 식·음료 및 급식시설 위생점검 등 책임 검식활동 수행
- 대회관련 식음료 공급 및 식품제조업소 등 지도·점검 실시
- 경기개최지역 및 관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식품접객업소, 식품제조·유통업소 위생교육 및 지도·점검강화
- 식품테러 및 우발사태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

### □ 추진방안

- 식약청(지방청) 및 경기 개최 시·도 등 전부서와 관련단체가 협조하여 안전한 식음료 공급체계 운영
- 미생물오염등 식중독사고 예방을 중점목표로 종사자 등 교육 및 구체적인 지도·점검대책 수립·시행
- 경기장·행사장 및 관광지 주변 등 대형 식품접객업소 및 김밥, 도시락, 햄버거 제조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 실시 등
- ※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수립·시행